

공고 제 2023 - 151호

[■] 통행의
금지·제한
[] 차량의 운행 제한

공고

「도로법」 제76조제1항·제2항, 제77조제1항·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,

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[■] 통행의
금지·제한
[] 차량의 운행 제한 을 공고

합니다.

2023년 2월 10일

영 광 군 수



도로의 종류	도시계획도로	노선명	중로 1-1
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	공사 출입 차량 제외한 전차량	구간	영광읍 교촌리 294-1번지 일원
기간	2023. 2. 27. ~ 2023. 4. 26.		

이유 : 차량 및 자전거 통행 위험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구조 및 선형 개선

그 밖의 사항

- 우회도로 : 소로 2-98, 2-205호선 우회 운행
- 통제 구간 위험표지 안내간판 및 안전휀스 설치 등

첨부서류: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

1. 도로의 종류 : 도시계획도로 중로 1-1호선
2. 제한 구간 : 전남 영광군 영광읍 교촌리 294-1번지 일원
3. 대상 차량 : 공사 출입 차량을 제외한 전차량
4. 제한 기간 : 2023. 2. 27. ~ 2023. 4. 26.
5. 이유 : 차량 및 자전거 통행 위험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구조 및 선형 개선
6. 기타 사항 : 소로 2-98, 2-205호선 우회 운행, 위험표지 안내간판 및 안전휀스 설치 등

